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310호
2026년 9월 4일
금요일

규 칙

- 규 칙 제 1186 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기 획 예 산 과 2
운영에 관한 규칙

공 고

- 공 고 제 1631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과 10
○ 공 고 제 1632 호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세 무 1 과 12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9월 4일

남동구 규칙 제1186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 도시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 회계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공단 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공단이 주관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은 남동구 및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선임대상자 추천 특례)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 공개 모집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2.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이어서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그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출 것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제12조(회계감사 계약) ① 공단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4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정 량 평 가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감사 수행 실적 . 징계현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0	
정 성 평 가	. 감사 인력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 기밀 및 감사자료 보안관리 체계 . 소요 예산의 적정성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합 계		100	

2. 평가방법

- 가. 평가 시 평가항목(내용), 항목별 점수 및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나. 정량평가는 공단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다. 정성평가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라.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
-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
- 회계감사인 자격, 선정절차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
- 회계감사 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631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0.
3. 공고대상 : 73수6698 외 22대 (별도 첨부)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사실을 공고 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 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032-453-2827)

2026. 9. 4.

남 동 구 청 장

구분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73수6698	그랜드스타렉스 (GRAND STAREX)	이*영	2026.08.27	소유자 요청
2	224고8813	Mercedes-Maybach S 580	신*****)	2026.08.26	소유자 요청
3	60루2633	BMW iX xDrive50	하*****)	2026.08.26	소유자 요청
4	209노7606	CADILLAC ESCALADE ESV	신*****)	2026.08.24	소유자 요청
5	240무2123	Mercedes-Benz E250	신*****사	2026.08.24	소유자 요청
6	경기33다4463	엑센트	김*환	2026.08.21	소유자 요청
7	177주4337	Mercedes-Benz GLC 300 4MATIC Coupe	하*****사	2026.08.21	소유자 요청
8	188두4835	DS3 Crossback 1.5 BlueHDi	신*****)	2026.08.18	소유자 요청
9	347서1794	Mercedes-Benz E350 4MATIC	신*****)	2026.08.18	소유자 요청
10	188호6994	G80	신*****)	2026.08.13	소유자 요청
11	43누9047	스포티지	한*원	2026.08.13	소유자 요청
12	246나8721	Mercedes-Benz S580 4MATIC	메*****)	2026.08.13	소유자 요청
13	27우2203	BMW i7 xDrive60	하*****)	2026.08.13	소유자 요청
14	01조6823	GLC350 e 4Matic	메*****)	2026.08.13	소유자 요청
15	172호4484	쏘나타 하이브리드 (SONATA HYBRID)	신*****사	2026.08.07	소유자 요청
16	179호6418	GV70	신*****사	2026.08.07	소유자 요청
17	189호9591	카니발 하이브리드	신*****)	2026.08.06	소유자 요청
18	236부1807	Mercedes-Benz E450 4MATIC	신*****)	2026.08.06	소유자 요청
19	361라5386	렉서스 ES300h	토*****사	2026.08.05	소유자 요청
20	110루2543	K9	최*희	2026.08.05	소유자 요청
21	189하6200	GV80	신*****)	2026.08.03	소유자 요청
22	96루2188	봉고III 플러스내장차	장*혁	2026.08.03	소유자 요청
23	373소2170	Mercedes-Benz GLE 450 4MATIC	신*****사	2026.08.03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632호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남 동 구 청 장

1. 금고의 수 : 1개의 금고(단수금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금고의 우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진행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공고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연계발행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 기 간 : 2026. 9. 15.(화)~9. 17.(목) (※09:00~18:00 근무시간 중)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1과(종합민원실 1층) (☎ 032-453-2362)
- 열람서류 : 2023~2025년도 결산서, 2026년도 예산서
- ※ 남동구 누리집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18:00 근무시간 내)
-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후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1과 세정팀(종합민원실 1층)
- 제출부수 : 제안서 14부 (원본1, 사본13), 증빙서류 14부(원본1, 사본1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1) 금고지정 신청서 1부.(원본 1부)
- 2) 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 3) 부속서류 각 1부.(원본 1부)
 - : ①각서 1부, ②사용인감확인서 1부, ③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④첨부서류(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 부속서류(3번)는 별도 지참하여 금고지정 신청서(1번)와 함께 제출
- 4) 기타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

- ※ 자료검증 및 심의자료 준비를 위한 확인 및 증빙자료 1부 별도 제출
- : 확인 및 증빙자료 책자 1부 및 해당 파일이 저장된 USB를 함께 제출(밀봉 제외)

▶ 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항목

-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1-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3-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중 (1) 금고관리업무 수행실적
-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6-가. 탄소중립 기여도 중
 - (1) 탄소중립 선언 여부 (2)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 (3)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2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6.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 참조

8. 심의·평가방법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금융기관 제안서를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6. 탄소중립 기여도 중 2)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 및 4)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 및 손해배상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남동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남동구 금고지정 공모 시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은 「2026년도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확인된 제안서 14부 및 증빙자료 14부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남동구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봉합·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세무1과로 문의(☎032-453-2362).